

# 공공조달

## 『혁신』·『우수』·『벤처』 제품

혁신적이고, 우수한 공공조달 물품 구매를 통해  
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!

구매혜택을 확인해 보세요.



# 혁신제품



## Q 혁신제품이란?

-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·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,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.(’19년 도입)

### 혁신제품 공공구매 실적

(단위:억원)

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1,876	2,976	4,678	7,936

### ■ 지정대상 물품

- 대상 물품 | 혁신성장지원, 국민생활문제, 정책지원 분야
  - (혁신성장지원 분야) 미래자동차, 드론, 에너지신산업, 바이오 헬스, 스마트공장, 스마트시티, 스마트팜, 핀테크, 로봇, 인공지능(AI), 탄소중립
  - (국민생활문제 분야) 안전, 환경, 건강, 복지, 교육, 문화, 치안
  - (정책지원분야) 수소기술, 무탄소 전원, 우주산업, 자동화항만·선박시스템, 저출산 대응
- 지정요건 | 특허권리자(실용신안도 가능), 시제품, 제조자

## Q 조달청 '혁신제품' 구매혜택은?('24.3월 기준)

- 국가계약법·지방계약법상 금액의 제한 없는 **수의계약 대상**
  - ※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
- 구매담당자의 **구매면책** 제도적 장치로 혁신제품 구매 지원
  - ※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제4항: 고의·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구매면책
- 혁신제품 **구매목표비율** 및 **기관평가 달성 가능**
  - ※ (목표) '23년 약 7천억원, (기관평가) 중앙 및 지자체 1%, 공공기관 2% 구매목표 달성을 평가
- **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**
  - ※ 판로지원법 제13조,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%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(총 13종)
-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초기 **혁신제품 시범사용 가능(530억원)**
- **혁신장터 플랫폼을 통해 혁신제품 검색 및 구매 가능(나라장터 계약 시스템 연계)**
  - ※ 향후,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확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지원
- 혁신제품 구매기관 중 **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(연1회)**



조달청

문의 :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(070-4056-7664, 7420, 7217), 혁신제품 지원센터(070-4304-6417)

※ 해당지역 각 지방청 공공조달 길잡이

# 우수조달물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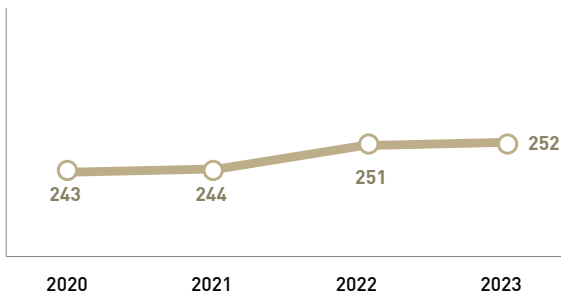


## Q 우수조달물품이란?

-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,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('96년 도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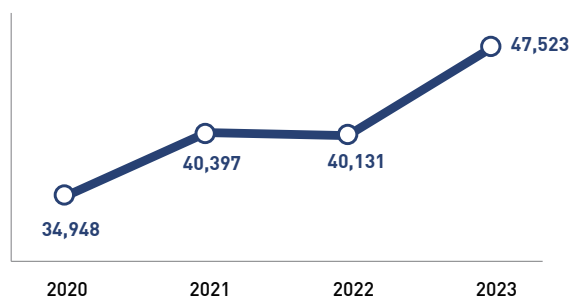
우수조달물품 지정현황(제품수)

(단위:개)



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실적

(단위:억원)



## ■ 지정대상 물품

- 중소·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소프트웨어 중에서 지정
  -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을 포함한 제품
  -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기술(NET 등)이 적용된 제품
  -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
  -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/W 인증제품(GS: Good Software)
  -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R&D 사업 성공 제품
  -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

## Q '우수조달물품' 구매 혜택은?('24.3월 기준)

- 국가계약법·지방계약법상 금액의 제한 없는 수의계약 대상
  - ※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의 5)
- 구매담당자의 구매면책 제도적 장치로 우수조달물품 구매 지원
  - ※ 판로지원법 제14조 제3항: 고의·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구매면책
-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
  - ※ 판로지원법 제13조,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%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(총 13종)
-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별도의 계약체결 부담 없이 간편하게 구매 가능
- 우수조달물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(연1회)



조달청

문의 :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(070-4056-7295, 7233),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(02-521-0014)

※ 해당지역 각 지방청 공공조달 길잡이

# 벤처나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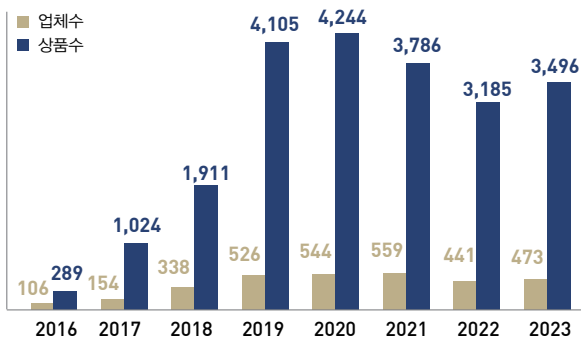
## Q '벤처나라' 란?

- 공공조달시장이 창업·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판로개척 및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몰입니다.('16년 도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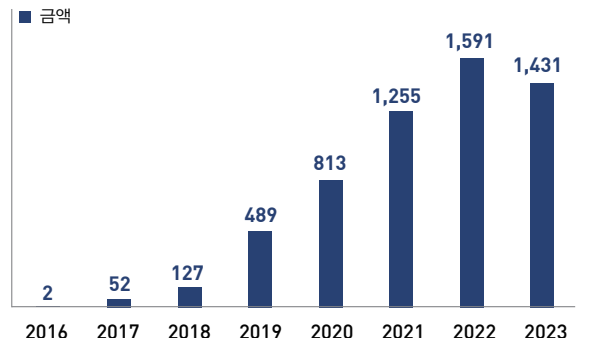
※ 기존 다수공급자계약, 우수조달물품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공공기관 홍보 및 거래

## '벤처나라' 상품등록 및 주문실적

■ 등록 실적 (단위:건)



■ 주문 실적 (단위:억원)



## ■ 지정대상 물품

- 대상 물품 |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 생산(OEM)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(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)
  - 벤처기업 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
  - 창업기업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,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(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)

## Q '벤처나라' 상품 구매혜택은?('24.3월 기준)

- 2천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 가능(나라장터 계약시스템 자동 연계)
  - ※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인경우 5천만원 이하
- 창업기업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  - ※ 중소기업창업법 제38조,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총 구매금액의 8%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
- 종합쇼핑몰에 없는 신기술, 융복합 기술 제품을 벤처나라에서 견적 주문(계약)을 거쳐 쉽게 구매
  - ※ 벤처나라 플랫폼을 통해 벤처·창업기업 물품검색 및 구매 등 기관의 수요매칭 지원
- 벤처나라 제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(연1회)